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지원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및 적합성인증 도입〉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3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6
2. 조문별 검토	11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11
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제2장)	19
다. 주력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제3장)	24
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제4장)	30
마. 보칙(제5장)	58
바. 벌칙(제6장)	60

※ 참고자료	64
--------------	----

참고1. 타부처 의견: 법무부 의견 원문	64
------------------------------	----

참고2. 「산업융합 촉진법」 참고 조문	6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
3. 회부연월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정부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작·생산·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주력

산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주력산업 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주력산업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를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생산, 수출, 고용 등 여러 면에서 영향력이 크고, 해당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전후방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을 통칭함¹⁾.

산업연구원의 산업전망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13개 산업²⁾으로 볼 수 있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상리스크 심화, 세계 경기 회복의 지연,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인 대외 여건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IT 신산업군(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상반기의 생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³⁾.

1)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와 활로」(2018. 4. 6.),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18-14)

2) 「2025년 경제·산업전망」(2024. 11.), 산업연구원(KIET)

3)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전망」(2025. 06.), 산업연구원(KIET)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 또는 1% 이하로 매우 낮게 예상되는 상황⁴⁾⁵⁾에서 주요 부진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 내수 소비 및 설비 투자의 감소 등이 꼽히고 있고,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 분야가 크게 부진하며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해당 산업군은 국가경제의 성장, 고용 및 수출 측면에서 비중이 크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현저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대외 수요 위축, 공급망 불안정 등과 맞물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부족, 생산성 정체 및 고부가가치화 실패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잠재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성장기반 약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견지에서 동 제정안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 등의 주력산업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지원 기반 및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정·금융 등의 지원과 아울러 규제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4) KDI 경제전망(수정, 2025년 8월)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전망

5)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2025. 4. 30.):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수정): 1.7% → 0.7%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6장, 3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주력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 제4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이루어짐.

제1장 총칙에서는 동 지원법안의 목적과 ‘주력산업’ 및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법률의 주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력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력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3장에서는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참여기업·기관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력산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제4장에서는 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인력확보·양성기관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력산업 신제품·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인증 등(이하 “규제특례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규제로 인해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제5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함.

그리고 제6장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과 규제특례등이 취소된 신제품·서비스를 판매·이용·제공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

[표 1] 제정안 목차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주력산업발전위원회)
제3장 주력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	제7조(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제8조(혁신클러스터의 지원)
	제9조(산업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제4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10조(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지원)
	제11조(주력산업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제12조(주력산업 인력의 확보)

장	조문
	제13조(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주력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제16조(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
	제17조(세제 지원)
	제18조(금융 지원 등)
	제19조(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2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23조(임시허가)
	제24조(임시허가의 취소)
	제25조(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26조(적합성 인증 심사)
	제27조(적합성 인증 등)
	제28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29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30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어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력산업’을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연

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을 열거하여 해당 산업분야를 포함하도록 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여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둘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및 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력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지원하고 산업통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셋째, 주력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인력확보 및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및 혁신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조세감면이나 재정·금융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넷째, 주력산업의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 인증에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력산업 사업자가 주력산업 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원활하게 실증 또는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주력산업이 효과적으
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제정안의 제명은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으로, 안 제1조(목적)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는 주력산업,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표 2]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력산업”이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

제정안

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산업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기업”이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란 국가가 주력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허가”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보 및 양성, 세제 및 금융지원, 규제특례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임을 나타냄.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 도모”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이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상위 목표와 연계하고자 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의 「산업발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산업융합 촉진법」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동 제정안은 ‘주력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므로 일부 조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표 3] 유사 입법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 목적 법률

「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u>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u>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u>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주력산업, 주력산업기업,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법적 개념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주력산업’의 경우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업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 등을 포함하도록 해당 산업분야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첨단전략산업법”)⁶⁾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별표]에 따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는 산업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를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지정하여 보호 및 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제정안과 해당 법률이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주력산업에 대한 별도 지원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는 의견(참고1 참조)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경우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가 기존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해 ㉠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기간 임시로 허가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됨.

그런데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제1호), 산업융합신제품(제2호) 및 산업융합 서비스(제4호)를 각각 정의하고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상 명확한 기준·요건이 없어 사실상 금지되고 기술·산업발전이 제약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다 제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거나 임시적으로 허가하여 산업융합을 활성화

7) 법무부는 동 제정안에 대해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접·유사한 주요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참고1] 타부처 의견: 법무부 의견 원문 참조).

하고자 함.

[표 4] 유사 입법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 6. (생략)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제정안의 경우에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데, 주력산업 해당 업종이 출시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모두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

기보다는 산업 재구조화·고부가가치화 과정에서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출시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도입 및 신산업 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고려하면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력 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주력산업의 경우에도 신기술·산업융합 등으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되고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규제 또는 임시허가가 가능할 수 있어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부과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동 제정안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제정안 입법취지 및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공감하나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9년부터 「산업발전법」이 산업정책의 기본법으로써 제정·시행되어 왔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외무역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에서 기술개발, 사업재편, 국제협력, 규제특례 등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제2장)

제2장(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지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표 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등 부문별 경쟁력 강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력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력산업의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 간의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주력산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제정안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력산업발전위원회) ① 주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력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주력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 현재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매년 실행 계획이 수립·시행됨.

즉, 주력산업 중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산업분야는 이미 5년마다 이를 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6]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u>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그리고 「산업발전법」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및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 등을 포함한 여러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주력산업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따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

9) 「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7] 주력산업 관련 산업부 주요 시책 수립·발표 현황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4.12.)
「철강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25.3.)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24.7.)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응대책」('25.4.)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24.11.)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25.1.) 등

다음으로,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력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데,

현재 「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각각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산업, 무역, 통상 및 에너지 부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있음.

따라서 주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면 기존 위원회와 일부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¹⁰⁾ 되어 있으므로 주력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 기존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¹¹⁾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행안부 (’25.5.23)	○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현행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계획에 관해 심의·의결 중임 ○ 따라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또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 가능

다. 주력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제3장)

1) 주력산업혁신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력산업 혁신 클러스터(이하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정된 혁신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기관들의 역량 강화,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7조(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이하 “혁신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청하려는 혁신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혁신클러스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기관들의 역량 강화 2.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 3.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역 외의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 5.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정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안 제8조는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첨단전략산업법」 및 「소부장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12개¹²⁾,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10개¹³⁾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해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입주기관지원, 부담금 감면특례, 기술개발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 등 조성·운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9] 특화단지 지정·지원 관련 조문목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12) ('23.7.)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 ('24.6.) 바이오(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춘천·홍천, 화순, 안동·포항)

13) ('21.2.) 경기반도체특화단지(반도체, 경기용인), 충북이차전지특화단지(이차전지, 충북 청주), 충남디스플레이특화단지(디스플레이, 충남천안), 전북탄소소재특화단지(탄소섬유, 전북전주), 경남정밀기계특화단지(기계금속, 경남창원) ('23.7.) 충북 오송 바이오 특화단지(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충북오송),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자율주행차, 광주), 대구 미래차 특화단지(전기차 모터, 대구), 부산 반도체 특화단지(전력반도체, 부산), 경기 안성 반도체 특화단지(반도체 장비, 경기안성)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클러스터 제도 도입에 대해 현행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산업 특화단지와 차별점이 불분명하고,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각종 유사 특구 제도가 중복되면 관련 기업을 집적하여 해당 산업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특구 제도 취지가 퇴색되며 지원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동 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9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력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며, 매년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주력산업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표 1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9조(산업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u>매년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력산업 관련 공공기관,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력산업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력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주력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라 주력산업 분류체계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산업통계가 확보되면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발전법」은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산업통계시스템을 구축¹⁴⁾하고 산업경쟁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¹⁵⁾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¹⁶⁾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산업 통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주력산업에 대해 별도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그리고 산업분류체계는 현재 「통계법」 제22조¹⁷⁾에 따라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들이 산업통계조사를 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ISTANS는 KSIC을

14) 「산업발전법」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5) 「산업발전법」

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16) 60대 주요산업 관련 산업 통계를 모든 국민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

17)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반으로 하되,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재분류¹⁸⁾하여 60대 산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산업분야 중 주력산업에 한정하여 별도로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므로 이에 따라 신규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기존 산업분류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8) ISTANS 60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

자료: https://www.istans.or.kr/kor/board/BoardDetail.html?sec_seq=&menu_id=2008102&_csrf=52f13b3d-c804-4c1c-a587-f1376c45e756&board_class=BOARD99&board_seq=1289&searchType=subject&keyword=&pageIndex=1

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제4장)

1)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제정안은 주력산업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활용 사업 전환 등 재구조화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력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를 개발·제작·생산·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표 11]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0조(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지원) 정부는 주력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 및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환경친화적 기술,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력산업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정부는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작·생산·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재구조화를 환경친화적 기술,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활용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과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보임.

[표 12] 「기업활력법」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 사업개편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개편시에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 등을 지원¹⁹⁾하고 있음.

19) 「기업활력법」 중 사업재편지원 관련 조문목록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5조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제28조(자금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30조(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그런데 안 제10조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재구조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고부가가치화 추진시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므로, 주력산업에 한정하여 지원근거를 법률에 재명시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년인력 확보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업훈련, 신규인력 유입활성화 및 퇴직근로자의 기능·지식 활용 등 인력 확보 사업을 지원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대학등,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표 1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2조(주력산업 인력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주력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3. 퇴직근로자 등 주력산업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4. 그 밖에 주력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

제13조(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주력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력산업 인력 확보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마이스터고, 기능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주력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21), 「첨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단산업인재 혁신법」 등에서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원 및 양성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대운영지원’(일반회계, 3161-302)²²⁾, ‘창의융합형학인재양성지원’(일반회계, 3161-303)²³⁾,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일반회계, 3171-430)²⁴⁾ 등의 사업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그 외에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사업(일반회계, 3161-315)을 통해 반도체·차·철강 분야 50여 개 과제로 석·박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석·박사 양성 특성화대학원²⁵⁾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산업기술대 운영지원 근거

2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근거

22) 사업목적 및 내용: 산업현장 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법정 최소 경비(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및 학교법인의 사용자법정부담금 지원

23) 사업목적 및 내용: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4) 사업목적 및 내용: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을 통한 미래 기술인재 등 필요 인력양성,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실습 추진 등 조선해양산업 인재양성·공급 체계 구축

25) 석·박사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현황

○ 지정현황: 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원 3개를 시작으로 '25.8월 현재 총 14개 대학원 지정

석·박사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 아카데미²⁶⁾를 통해 재직자·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업종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에 한정하여 별도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주력산업의 상당 분야가 첨단전략산업과 중복되고 그 외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인력양성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력산업에 한정하

【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현황 (14개) 】

분야	선정 대학
▲ 반도체 (6개)	• ('23 선정) 성균관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24 선정) 경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 디스플레이 (2개)	• ('24 선정) 성균관대학교 • ('25 선정) 연세대학교
▲ 배터리 (4개)	• ('24 선정) 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 ('25 선정) 가천대학교
▲ 바이오 (2개)	• ('24 선정) 연세대학교 • ('25 선정) 서울대학교

○ 지원예산: 학교당 연간 30억원, 5년간 150억원 내외
* 예산(억원) : ('23) 90 → ('24) 330 → ('25) 420

26)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현황 :

○ 반도체('23~), 배터리('24~), 디스플레이('25~) 분야 아카데미 운영·지원 중

【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억원)		교육인원 (명)	
		'24년	'25년	'24년	'25년(계획)
▲ 반도체아카데미구축(3161-329)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2.6	57.1	800	1,000
▲ 배터리아카데미구축(3161-311)	배터리아카데미구축, 남부권교육과정운영	57.1	60	870	1,080
▲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3161-333)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	37	-	700

여 인력양성 지원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기능대학을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에는 대학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⁷⁾이므로,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7)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교육부 (‘25.5.14.)	○ 제2호 후단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수정 필요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고등교육 정책 방향,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등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임

3) 기술개발, 해외진출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력산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정보수집·제공·상담, 교육·컨설팅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화 및 자동화, 환경친화적 기업·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제16조).

[표 1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4조(주력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력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주력산업 관련 기술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4.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주력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해외전시회 등의 개최·참가 3. 주력산업 수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주력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다.

제16조(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력산업기업·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자동화
2. 주력산업기업·주력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산업으로의 전환
3.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 촉진 및 활성화
4. 동반성장을 위한 주력산업기업 간 네트워크의 강화
5. 주력산업기업·주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주력산업기업과 협력업체 간 주력산업 관련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우선, 제정안은 주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²⁹⁾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13.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정안과 같이 주력산업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지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은 주력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진흥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거나 전시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고³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공사는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³¹⁾.

30)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 투자의 촉진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 촉진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 무역업체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주력산업으로 한정하여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기존 법률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주력산업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안과 유사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첨단화·자동화 등을 포함한 융합 신산업의 지원(제17조), 산업간 융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제18조), 산업간 협력체계의 구축(제20조),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제19조)³²⁾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지원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32)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2.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과 확산
 3.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원
 4.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5.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6.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이종(異種) 분야 간 교류의 촉진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8.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융합 관련 연구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연구 성과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실시 및 교류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사업

2.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시험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개·알선 등의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화

3. 해외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의 유치

4. 산업융합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산업 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세제 및 금융지원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 또는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 및 제18조).

[표 1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7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금융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선, 안 제17조는 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를 두 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³³⁾³⁴⁾을 통해서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각 법률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에 별도로 조세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³⁵⁾, 동 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8조에 따르면 주력산업기업은 우선적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출연 또는 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3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5) 세제 지원 관련 관계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	의견 주요내용
기재부 (‘25.5.14.)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감면 부분 삭제 필요 ○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법에 규정을 둘 실익도 없음
행안부 (‘25.5.23.)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감면 부분 삭제 필요 ○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임 ○ 개정안의 경우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

현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분야에 투자, 융자 등으로 자금을 공급³⁶⁾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소부장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³⁷⁾ 또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기술개발³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R&D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한국산업은행 외의 공공기관을 통해 주력산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

36)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육성

2. ~ 8. (생략)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 9. (생략)

3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13.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3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산업 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출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가 마련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제정안은 재정 및 금융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폭넓게 규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재
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5)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제정안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표 1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9조(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 ① 국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의 세부 감면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³⁹⁾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권한이 있을 뿐

39)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감면해주는 주체는 아님.

따라서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도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은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원가주의가 적용되고, 특정 지역·대상에 대한 요금 감면시 타 소비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임.

6)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 인증 등

제정안은 허가등의 기존 법령에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적정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험·검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기간·규모 등을 정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안 제20조~제22조),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효기간(1회 연장 가능) 내에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고(안 제23조 및 제24조),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법령에 적정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적합성인증을 받아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0조)

[표 17]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u>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u> (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u>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u>
2. <u>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u>

제정안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정안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⑪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

제정안

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제2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0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제정안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임시허가) ①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불

제정안

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

제정안

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정안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7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2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운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제29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 2. 위원회 제30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27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그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u>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u>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이른바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중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도입하고, 신제품의 안전성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법령상 적정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더라도 적합성인증을 하여 기존과 같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출시를 용이하게 하여 주력산업의 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에서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총 11개 조문(참고2 참조)을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

즉,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조자등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정안은 주력산업 사업자가 주력산업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⁴⁰⁾.

그런데 기존에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서도 제조자등은 신제품·서비스가 개발·출시된 경우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한 제도를 재규정하게 되므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대부분의 조문이 조문 위치, 용어 차이(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위원회) 외에는 유사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는 동 제정안에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융합촉진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대상 중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제3호)은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마. 보칙(제5장)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1조),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표 1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지원하고, 주력산업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인력확보 및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권한 및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를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각각 위임·위탁하는 것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업무 위탁 대상인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위탁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은 업무위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데, 이는 업무 수행시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바. 벌칙(제6장)

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등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나 규제특례등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표 1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을

제정안
판매 또는 설치·운영 등을 한 자 6.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등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제특례등이 취소되었으나 계속 이를 판매·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규제특례등은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시험용으로 한정하거나 안전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거나 인증해주려는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위험, 규제특례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규제특례등이 취소되었으나 계속 판매·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그 외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제2호)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의 경

우에도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고자함.

참고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르면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제3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정안도 이와 같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표 20] 「산업융합 촉진법」상 벌칙 및 과태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6. 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456

□ 법무부 의견 : 충분검토 필요

- 전세계적 산업구조 전환 및 자국산업 보호 강화 기조 속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 양성·지원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 다만, 본 제정안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규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같은 산자부 소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주력산업’에 관한 별도 법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충분한 정책적 검토 필요
 - 두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또는 배터리 산업 등 적용대상 산업분야가 일부 중복되고, 주요 지원 또는 특례 내용도 유사성이 있음(※ 아래 표 중 밑줄 부분. 특히, 주력산업법상 ‘주력산업’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적용대상 산업 분야 중첩이 확대될 가능성 있음)
 - 신제품·서비스의 실증(實證) 및 인허가 준비단계에서 기존 기준·규격·요건 등 미비나 적용 부적절 시 대응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20조부터 제22조, 임시허가(안 제23조 등), 적합성 인증(안 제25조부터 제29조) 등 제도는 주력산업법 제정안에 특유한 내용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도 시행 고려 필요
 - 인접·유사한 국가정책적 주요 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구 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력산업법안
입법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제1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 (안 제1조)
대상 산업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①반도체(첨단 메모리 반도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연관 산업), ②이차전지(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고용량	● 주력산업 (안 제2조 제1호) :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구 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력산업법안
	양극재,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③디스플레이(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친환경 퀀텀닷 소재 패널,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패널, 나노 발광다이오드 패널, 차세대 디스플레이), ④바이오(바이오의약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주요 규제 내용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제10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 보호조치의무,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등(제11조 등)	-
주요 지원·특례 내용	•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u>기본계획 수립</u>(제5조) •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조성·운영 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 신속처리(제16조 등) • 중소·중견기업 혁신발전 지원(제2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추진,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 지원(제25조 등) • 규제개선 신청제도, 관리·감독(제29조 등) • 투자활성화 지원(제32조), 세제 지원(제34조), 전문인력양성(제35조) 등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u>기본계획 수립</u>(안 제5조) •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원(안 제7조 등) • 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화 지원(안 제10조,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13조) • 주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지원(안 제14조 등) • 세제 지원(안 제17조), 투자·금융 지원(안 제18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안 제20조~제22조), 임시허가 제도(안 제23조 등), 적합성 인증제도(안 제25조~제29조) • 손해보장사업 실시(안 제30조)

○ 또한, 규제특례·임시허가 받은 신제품·서비스 제공자의 고의·무과실 입증 시 그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안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동법 제3조)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책임보험(안 제20조 제2항)이나 별도의 배상방안(안 제23조 제2항) 적용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도입 여부는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

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⑪ 삭제 <2021. 6. 15.>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6. 15.>

④ 삭제 <2021. 6. 15.>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3.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

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들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조자들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산업융합촉진 ombudsman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들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